

「설계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가이드라인

2022

+

+

+

+



국토교통부



KIC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은 1975년 도입되어 2010년 전면 개편 이후 4번의 부분 개편을 통해 건설업체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설 신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20.10월에는 일괄·대안·기술제안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분야를 신설하여 기술형입찰 사업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을 전통적 건설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고부가치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을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을 통해 '20.9월 발표하는 등 시공중심에서 설계중심의 기술형입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 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역량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유도과 설계 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발주청에게 해당하는 절차와 양식을 제공하고자 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각 발주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용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기술혁신과로 보내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설계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담당자들이 설계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도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입찰방식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설계분야의 기술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이 상 일

1. 일반사항

1.1 목적	3
1.2 적용범위, 관련법규 및 기본원칙	3
1.3 용어 정의	4
1.4 가이드라인의 구성	5

2. 설계 주도 공동도급형 방식

2.1 정의	9
2.2 기획재정부 특례승인 절차	9
2.3 시행전 고려사항	11
2.4 시행절차	18
2.5 특례승인요청 예시	21

3. 양식 및 관계법령

3.1 양식	27
(1) 입찰안내서 표지	27
(2) 입찰안내서상 유의사항 기입 양식	28
(3) 입찰공고문 양식	28
(4) 설계분야 사전심사 세부기준	29
(5) 공공기관 계약특례 신청서(기재부 제출용)	30

CONTENTS

3.2 관계법령	32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32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33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34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36
(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84조	37
(6)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7조	38
(7)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41
(8)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6조	45

부 록

1. 설계주도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 개요	49
2. 설계주도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의 추진 사유	53
3. 설계주도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의 장단점	54

설계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가이드라인



제1장 일반사항

- 1.1 목적
- 1.2 적용범위, 관련법규 및 기본원칙
- 1.3 용어 정의
- 1.4 가이드라인의 구성

1.1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설계 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역량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유도과 설계 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발주청에게 해당하는 절차와 양식을 제공하여 제도 도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관련법규 및 기본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 개정에 앞서 ‘설계주도형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일괄입찰방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때 적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유관 법령 및 조항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동조제5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1호가목 및 별표2의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7조제3항 및 별표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이 있다.
- 본 가이드라인은 시범 일괄입찰방식 적용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은 시범 일괄입찰방식 적용전 기획재정부 특례적용 요청서를 만드는데 자료로 활용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계약의 특례적용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도표는 해당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포함)의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본 가이드라인은 도로 일괄입찰방식 시범사업의 추진 결과물을 기초로 작성되어 양식 등이 도로사업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사용시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괄입찰방식 절차가 시설물별로 상이하지 않으므로 일괄입찰방식의 이해를 돕는 데는 무리가 없다.

1.3 용어 정의

-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3.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설계주도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이란 기존의 시공자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계약자를 설계자로 하거나 주계약자는 시공자로 하되 사업관리를 설계자에게 일임하여 설계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7. “특례 적용”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 건설 및 계약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4 가이드라인의 구성

- 본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사항인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1. 일반사항”과 설계 주도 공동도급형 방식의 장단점과 시행전 고려사항 및 시행절차를 안내하는 “2. 설계 주도 공동도급형 방식”, 과 설계 주도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각종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 주도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활용에 필요한 자료를 별첨으로 구성하였다.

설계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가이드라인



제2장 설계 주도 공동도급형 방식

- 2.1 정의
- 2.2 기획재정부 특례승인 절차
- 2.3 시행전 고려사항
- 2.4 시행절차
- 2.5 특례승인요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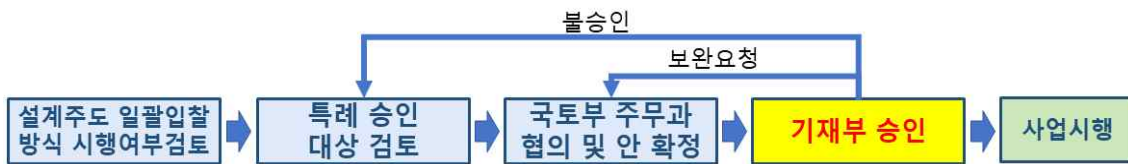
2.1 정의

- 설계주도 공동도급형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이란 기존 방식인 시공주도 공동도급형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에서 주계약자를 설계사로 하는 계약방식으로써 설계사가 공동도급의 주관이 되는 방식이다. 설계사 관점에서 설계시공분리방식보다는 리스크 부담이 크지만 계약에 의해 발주자와 시공사와 리스크 분배가 가능한 계약방식이다.



설계주도 공동도급형 방식 개념

2.2 기획재정부 특례승인 절차



기재부 특례승인 절차 개요

(1) 설계주도 일괄입찰 방식 시행여부 내부 검토

- 발주청에서는 300억 미만의 공사중 설계주도 일괄입찰방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주도 방식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 설계주도 일괄입찰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는 시공 기술 인력과 설계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완성도 높은 시설물 건설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특히, 소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가능하고, 민간의 풍부한 기술력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또한, 기술형입찰의 건설프로세스의 통합관리(설계·시공)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사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특례승인 대상 검토

- 설계사를 평가하기 위한 설계PQ의 도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면허보완 불허로 요약되며 상세한 내용은 ‘2.4 시행전 고려사항’을 참고한다.

(3) 국토부 주무과 협의 및 안 확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재부에 서류제출전에 국토부 주무과(기술혁신과)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최종 안을 도출해야 한다.

(4) 기재부 승인

- 특례 승인을 위한 협의를 진행후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국토부 담당주무과와 협의하여 수정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한다.
 - 본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보완요청사항과 비교하여 미진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강한다.
- 특례 불승인인 경우에는 특례 요청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불승인 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주무과와 협의후 승인요청 자료를 보완한다.
- 특례승인이 완결되면 발주청 내부의 방침을 확정하고 사업수행에 착수한다.

2.3 시행전 고려사항

(1) 기획재정부 특례사항 검토

● 특례 적용의 근거 법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은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규칙 동조 제3항에 의해 이때 주무기관을 거치게 되어있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 제3항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 설계 PQ 평가기준 신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21.9.14 개정)에서 설계사는 실적 및 기술능력 등 심사기준 없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설계사 주도를 위해서는 설계 PQ 평가가 필요하므로 시행전 특례승인이 필요하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84조 1항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 설계 참여사에 대해 자격심사[설계 P.Q(기술력·실적·신용도 등)] 기준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개선하여 기술형입찰의 건설프로세스의 통합관리(설계·시공)역량 강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현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항목에 이행실적과 기술능력이 포함되어 있어 시공사가 대표자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실질적 설계자 주도를 위해 설계 P.Q 평가가 필요하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13조 2항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와 별표3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항목과 배점한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중 시공경험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목의 조정이 필요하다.

●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30 (34)
		나.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20 (22)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 적합계	10 (11)
2. 기술능력	45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30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4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
		라. 기타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 신인도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2) <삭제 2019.12.18.>	<삭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012.7.4. 라목에서 이동, 개정 2015.9.21>	-5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2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7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7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1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2회 받은 자	-0.5
		· 3회 이상 받은 자	-1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0.5
		· 2회이상 받은 자	-1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2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3
		· 2등급인 자	+2

을 메워 줄 수만 있어 설계사가 주도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의 변경이 필요하다.

- 또한 설계사가 설계에만 업무가 국한 될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의 역할은 존재하지만 시공단계에서의 역할은 대폭 축소되거나 전무하게 되므로 시공이 완료될때까지 설계사가 책임과 권한을 가질 업무가 필요하다.
- 이에 시공면허를 가진 설계사가 대표사가 될 수 있는 면허보완 불허 특례승인을 받아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각각 책임과 계약 이행 의무를 부여하되 설계PQ단계를 통해 설계실적이 없는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16조 1항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설계PQ와 시공PQ 검토

- 건설공사계약 절차에 설계PQ를 추가하는 것은, 기존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없는 절차이므로 기재부 장관의 승인 필요하다는 것은 위에서 상술했다.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없는 설계PQ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수립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1항과 5항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제시된 평가기준을 참고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1호 가목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1호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 발주기관의 상황에 맞게 배점을 결정하여 설계PQ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1호(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50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업체의 직전 용역 등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 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충족도	10	참여기술인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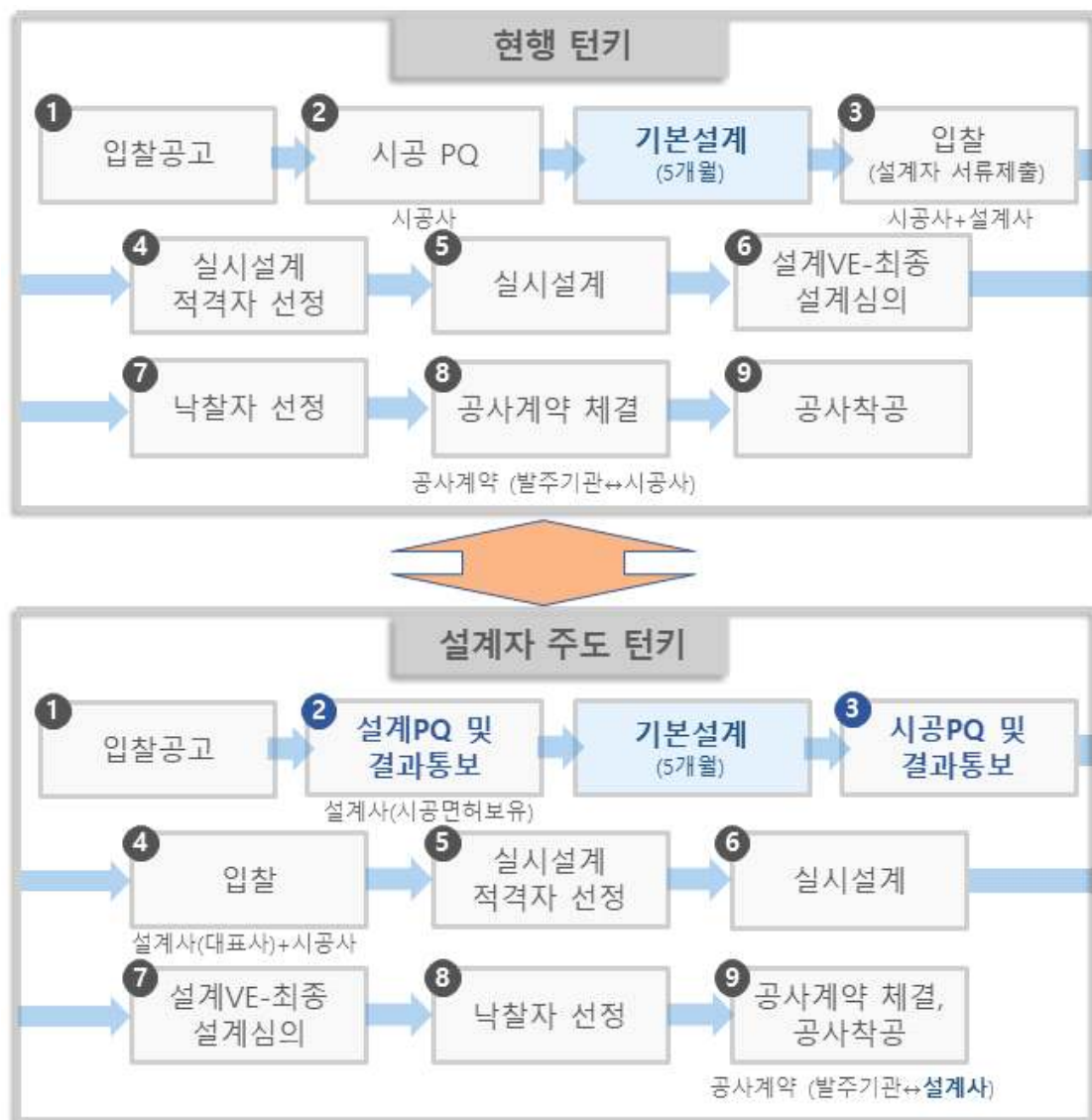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평가기준과 예시를 참고하여 각 발주청 특성에 맞게 배점기준을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의 1호(상세 평가기준 예시)

평가기준	배점	만점 예시	평가기준	배점	만점 예시
참여 기술인 (50)	등급	11	업체 (50)	실적	15
		구분 등급			구분 실적
		사책 특급			금액 40억
		분책 고급			횟수 3건
		분참 중급			
					· 용역성과(2), 전차(1)
	경력	16	가· 감점	신용도	10
		구분 경력			· 영업정지(3) · 신용평가등급(3) · 설계관련벌점(4)
		사책 15년		기술 개발	15
		분책 10년			· 신기술, 특허출원 등 · 개발실적(2) · 투자실적(10) · 활용실적(3)
		분참 5년			
	실적	18		중복도	10
		구분 횟수			구분 중복 비율
		책임 10건			책임(참여) 250%
		참여 5건			실무 200%
		개월 48개월			미만 미만
	사책 능력	3		비리 감점	-10
		· 사책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 실적으로 대체 가능		신규 고용	+0.3
	교육	1			고용 가점
		· 교육훈련 - (2주 이상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1% ↑ 2% ↑ 3% ↑ 0.1 0.2 0.3
	전차 용역 수행 실적	1		기술인 참여	+0.2
		· 전단계용역 수행 - 용역종류 및 기술인별 가중치			고용 가점
					1% ↑ 3% ↑ 5% ↑ 0.1 0.15 0.2

2.4 시행절차

- 설계 주도 설계시공입찰방식의 시행절차는 1) 입찰공고, 2) 설계PQ, 3) 기본설계, 4) 시공PQ, 5) 입찰, 6)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7) 실시설계, 8) 설계VE와 최종 설계심의, 9) 낙찰자 선정, 10) 계약체결 및 공사 착공으로 진행한다.
- 설계주도형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 설계자의 주도적 역할부여 등을 위한 설계PQ와 시공PQ의 분리시행 및 절차를 제외하고는 발주기관의 통상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1) 입찰공고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사항외에는 발주청의 통상의 설계·시공입찰방식 입찰공고 방식을 준용하여 입찰공고를 한다.
- 입찰공고문에 “설계 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범사업 대상공사”라는 점과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에 설계분야 및 시공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한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신청서 제출자격으로는 설계분야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에 등록한 자로 한정하고, 시공분야의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업체 포함)이어야 함을 명시한다.
- 본 시범사업에서 설계분야와 시공분야에서의 면허보완 및 업무분담은 모두 불허되며 지분구조가 제일 높은 회사가 대표사로 선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2) 설계PQ 및 결과 통보

- 사전에 기획재정부 특례사항으로 승인받은 설계PQ에 기초하여 설계사에 대한 사전자격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업체에 통보한다.
- 승인받은 PQ에 의한 사전자격심사 과정등은 기존 발주청의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절차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 발주청의 발주절차중 설계PQ 특례사항에 위배되거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재협의를 시행한다.

(3) 기본설계 실시

- 설계PQ를 통과한 업체는 각자의 설계능력을 발휘하여 목적물에 적합하고 발주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이때 참여기술인 고강도 근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입찰 안내서에 명시한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라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그 외에서는 발주청의 통상의 설계·시공입찰방식 기본설계 단계를 준용한다.

(4) 시공PQ 및 결과통보

- 완성된 기본설계에 기초하여 대표사(설계사)는 공동으로 참여할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동수급협정을 맺는다. 이때 시공부문중 가장 큰 비중은 설계사가 수행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허보완을 허용한다.
- 그 외에서는 발주청의 통상의 설계·시공입찰방식 시공PQ 및 결과통보 절차를 준용한다.

(5) 입찰

- 설계사를 대표사로하고 시공사가 공동사인 컨소시엄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되 발주청의 통상의 설계·시공입찰방식 입찰 절차를 준용한다.

(6)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발주청의 통상의 설계·시공입찰방식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절차를 준용한다.

(7) 실시설계

- 발주청의 통상의 설계·시공입찰방식 실시설계 절차를 준용하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총 공사일수를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결정됨을 고지시킨다.

(8) 설계VE-최종설계심의

- 발주청의 통상의 설계·시공입찰방식 설계VE와 최종설계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9) 낙찰자 선정

- 발주청의 통상의 설계·시공입찰방식 낙찰자 선정 절차를 준용한다.

(10) 공사계약 체결, 공사착공

- 발주청의 통상의 설계·시공입찰방식 공사계약 체결과 공사착공 절차를 준용한다.

2.5 특례승인요청 예시

- 기재부에 특례를 요청할때는 다음의 예시를 참조하고 발주청 특성을 반영하여 특례승인 요청(안)을 작성한다.

○○○○발주청 설계 주도형 턴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승인 요청(안)

I. 추진배경

- 1975년 도입된 턴키는 국내 **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 반면, 평가 공정성 문제와 대규모 공사 감소로 '17년 이후 발주 금감
 - * 공공발주의 비중 : ('17) 7.3조, 15.9% → ('18) 4.4조, 10.6% → ('19) 3.3조, 6.8%
- 해외 선진국은 전통적 계약방식에서 Design-build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역량이 있는 업체가 주도**
 - * 해외 선진국은 **공기단축** 등이 필요한 **일반공사까지 기술형입찰**을 실시하여 **공사비중이 40% 내외**를 차지 (영 39%, 미 38% 등)
- 이에 반해, 기술형입찰 참여 설계사는 시공사의 **설계업무를 단순 지원하는 형태로** 하청 계약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 **시공과 설계** 업역 이원화로 부족한 **통합기술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설계사의 시공부문 역량 강화로 설계 고도화 도모 필요
 - 턴키 사업에 참여하는 **설계Eng업체**의 기술력 증진과 지휘 향상 및 설계참여기술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설계부문 제도개선 필요**
- 소규모 정책 사업 중 공기단축 필요로 일괄입찰 시행시 **시공과 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단독참여 또는 설계사와 시공전문업체와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시공 실적 평가 완화 검토)

II. 추진방안

- (대상사업) ○○○○○○사업
 - 사업내용 : ○○○○ / 사업비 : ○○억원(공사비 : ○○억원)
- (현행) 시공자는 계약예규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기술력·실적·도급액 등을 고려한 **입찰참여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 설계사는 실적 및 기술능력 등 심사기준 없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 (개선) 설계 참여사에 대해 자격심사[설계 P.Q(기술력·실적·신용도 등)] 기준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개선

* 現 0000발주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설계 P.Q평가를 도입하여 설계+시공 통합역량이 우수업체 선정 및 성과 품질 강화

- (효과) 기술형입찰의 건설프로세스의 통합관리(설계·시공)역량을 강화하여 해외사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

〈설계 주도형 턴키 시행절차(안)〉

① 입찰공고 → ② P.Q(설계 P.Q 추가) → ③ 기본설계 → ④시공P.Q → ⑤입찰·설계심의 → ⑥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⑦실시설계 → ⑧설계VE·최종 설계심의 → ⑨낙찰자 선정 → ⑩계약체결(발주청 ↔설계자) 및 공사시행(설계자)

Ⅲ. 특례승인 사항

- 설계 P,Q 평가기준 신설

- (사유) 건설공사에 대한 現 P.Q기준* 상 시공자가 대표자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실질적 설계자 주도를 위해 설계 P.Q평가 필요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계약예규) 별표2 : 기술적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특례승인 사항) 설계용역 P.Q평가기준* 준용

- 통과점수 : 85점 이상* 참고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평가기준			배점	내용				평가기준			배점	내용															
참여 기술인 (50)	등급	12	<table><tr><td>구분</td><td>사책</td><td>분책</td><td>분참</td></tr><tr><td>등급</td><td>특급</td><td>고급</td><td>중급</td></tr></table>				구분	사책	분책	분참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업체 (50)	실적	15	· 실적(12) <table><tr><td>구분</td><td>금액</td><td>횟수</td></tr><tr><td>실적</td><td>40억</td><td>3건</td></tr></table> ·상시평가(2), 전차(1)				구분	금액	횟수	실적	40억	3건
	구분	사책	분책	분참																							
	등급	특급	고급	중급																							
	구분	금액	횟수																								
	실적	40억	3건																								
경력	17	<table><tr><td>구분</td><td>사책</td><td>분책</td><td>분참</td></tr><tr><td>경력</td><td>15년</td><td>10년</td><td>5년</td></tr></table>				구분	사책	분책	분참	경력	15년	10년	5년	신용도	12	·영업정지(3) ·신용평가등급(3) ·설계관련벌점(4) ·감사기관처분(2)											
구분	사책	분책	분참																								
경력	15년	10년	5년																								
실적	19	<table><tr><td>구분</td><td>책임</td><td>참여</td></tr><tr><td>횟수</td><td>10건</td><td>5건</td></tr><tr><td>개월</td><td>48개월</td><td>24개월</td></tr></table>				구분	책임	참여	횟수	10건	5건	개월	48개월	24개월	기술 개발	13	·신기술, 특허출원 등 ·개발실적(2) ·투자실적(9) ·활용실적(2)										
		구분	책임	참여																							
		횟수	10건	5건																							
개월	48개월	24개월																									
교육	1	·교육훈련 - (2주 이상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가·감점	중복도	10	<table><tr><td>구분</td><td>책임(참여)</td><td>실무</td></tr><tr><td>중복 비율</td><td>250% 미만</td><td>200% 미만</td></tr></table>				구분	책임(참여)	실무	중복 비율	250% 미만	200% 미만									
		구분	책임(참여)	실무																							
중복 비율	250% 미만	200% 미만																									
전차	1	·전단계용역 수행 - 용역종류 및 기술인별 가중치				비리 감점	-10	·금품수수 등 비리 사실에 대한 감점																			
						신규 고용	+0.3	<table><tr><td>고용</td><td>1% ↑</td><td>2% ↑</td><td>3% ↑</td></tr><tr><td>가점</td><td>0.1</td><td>0.2</td><td>0.3</td></tr></table>				고용	1% ↑	2% ↑	3% ↑	가점	0.1	0.2	0.3								
고용	1% ↑	2% ↑	3% ↑																								
가점	0.1	0.2	0.3																								
						기술인 참여	+0.2	<table><tr><td>고용</td><td>1% ↑</td><td>3% ↑</td><td>5% ↑</td></tr><tr><td>가점</td><td>0.1</td><td>0.15</td><td>0.2</td></tr></table>				고용	1% ↑	3% ↑	5% ↑	가점	0.1	0.15	0.2								
고용	1% ↑	3% ↑	5% ↑																								
가점	0.1	0.15	0.2																								

□ 입찰참가자격 신설

- (사유) 공동 입찰을 통하여 면허 보완을 허용하는 경우 대표자인 설계자에게 설계와 시공 각각의 책임과 계약 이행 의무를 부여하기 곤란함
- (특례승인 사항) 대표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와 엔지니어링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 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동 입찰을 통해 면허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음

□ PQ심사기준(안)

구 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시공경험분야 (42점)	최근 5년간 토목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 (42점) ※ 공사 PQ기준 적용	○ 등급 실적합계액 ÷ (예정금액 × 3) = 실적계수 * 예정금액은 설계가격(추정가격+부가세) 적용 ○ 평점 실적계수 × 42.0 =평점[단, 상한은 42.0점] ※ 평가기준 완화

구 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기술능력평가 (42점)	가. 시공사 기술자(32.7점)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보유인력으로 평가) ※ 공사 PQ기준 적용	○ 토목분야 기술자 보유 - 10인 이상 : 32.7점 - 8인 이상 : 30.9점 - 6인 이상(토목면허 등록요건) : 29점 ※ 평가기준 완화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9.3점) ※ 공사 PQ기준 적용	○ 배점한도 적용 ※ 평가기준 완화
시공평가결과 (8점)	시공평가 점수(8점) ※ 공사 PQ기준 적용	○ 배점한도 적용 ※ 발주청 PQ심사기준 <별표3-2> 적용
지역업체 참여도 (8점)	지역업체 참여도(8점) ※ 공사 PQ기준 적용	○ 산 식 $\text{배점} \times \frac{\text{지역업체 시공비율}(\%)}{40\%}$ ※ 발주청 PQ심사기준 <별표3-2> 적용
신인도 평가 (+3점 ~ -7점)	<별표 3-1>과 동일 ※ 공사 PQ기준 적용	시공업체 성실성,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관련, 건설재해·제재처분 등 : [붙임2] 참조 ※ 지분율에 따라 평가, 평가불가능 항목 평가 제외

설계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가이드라인

제3장 양식 및 관계법령

3.1 양식

- (1) 입찰안내서 표지
- (2) 입찰안내서상 유의사항 기입 양식
- (3) 입찰공고문 양식
- (4) 설계분야 사전심사 세부기준
- (5) 공공기관 계약특례 신청서 양식(기재부 제출용)

3.2 관계 법령

-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 (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 84조
- (6)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제7조
- (7)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 (8)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6조

(1) 입찰안내서 표지

00000000 공사

입찰안내서

(일괄입찰(설계자 주도 방식 적용))

2022

발주기관명

(2) 입찰안내서상 유의사항 기입 양식

1-1-1 목적

본 입찰안내서는 0000에서 설계 주도형 일괄입찰(스마트건설기술 적용) 시범사업으로 발주하는 0000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자가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환경 및 공정 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로서 계약서, 설계서 등과 함께 당해 공사의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문서이다.

(3) 입찰공고문 양식

공 사 입 찰 공 고

(설계 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범사업 대상공사)

0. 입찰에 부하는 사항

0. 입찰 및 계약방식

0.0 본 건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설계·시공 통합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설계 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범사업」입니다.

0. 입찰참가자격

0.0.0 대표사는 0.0의 설계분야 및 0.0의 시공분야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0.0.0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0.0의 설계분야 또는 0.0의 시공분야 자격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0.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자격

0.0 설계분야

0.0.0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0.0.0 설계분야 사전심사 기준은 <별첨1> “설계분야 사전심사(P.Q) 세부기준” 참고합니다.

0. 공동계약 사항

0.0 공동계약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0.0의 설계분야와 0.0의 시공분야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0.0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자격으로 요구한 0.0의 설계분야와 0.0의 시공분야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022.

발 주 기 관 장

(4) 설계분야 사전심사 세부기준

- 공사명 : OOOO공사
- (평가기준) OOOO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 (적격요건) 00점 이상

평가항목		배점	내용				평가항목		배점	내용											
1. 참여 기술인 (00)	가. 등급	00	<table><tr><td>구분</td><td>사업 책임기술인</td><td>분야별 책임기술인</td><td>분야별 참여기술인</td></tr><tr><td>(만점) 등급</td><td>특급</td><td>고급 이상</td><td>중급 이상</td></tr></table>	구분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만점) 등급	특급	고급 이상	중급 이상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00)	가. 실적금액 및 건수	00	<table><tr><td>구분</td><td>(만점) 금액</td><td>(만점) 횟수</td></tr><tr><td>실적</td><td>40억 이상</td><td>3건 이상</td></tr></table>	구분	(만점) 금액	(만점) 횟수	실적	40억 이상	3건 이상
	구분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만점) 등급	특급	고급 이상	중급 이상																	
	구분	(만점) 금액	(만점) 횟수																		
	실적	40억 이상	3건 이상																		
	나. 경력	00	<table><tr><td>구분</td><td>사업 책임기술인</td><td>분야별 책임기술인</td><td>분야별 참여기술인</td></tr><tr><td>(만점) 경력</td><td>15년 이상</td><td>10년 이상</td><td>5년 이상</td></tr></table>	구분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만점) 경력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나. 용역평가 결과	0	◦ 산출식 : 배점×적용계수							
				구분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만점) 경력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다. 전차용역 수행실적	0	◦ 산출식 : 배점×A×B×C · A : 전차용역 경과기간 계수 · B : 전차용역 참여지분율 · C : 전차용역 연장비율에 따른 계수																		
	라. 특별제안 (가점)	+0.0	◦ 산출식 : 특별제안 획득가점 ≤ 0.5																		
다. 실적	00	<table><tr><td>구분</td><td>책임기술인</td><td>참여기술인</td></tr><tr><td>(만점) 횟수</td><td>10건 이상</td><td>5건 이상</td></tr><tr><td>(만점) 개월수</td><td>48개월 이상</td><td>24개월 이상</td></tr></table>	구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만점) 횟수	10건 이상	5건 이상	(만점) 개월수	4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 신용도 (00)	가. 영업(업무)정지(0) 다. 설계관련 벌점(0)	나. 신용평가등급(0) 라. 감사기관 처분(0)							
			구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만점) 횟수	10건 이상	5건 이상																
(만점) 개월수	4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00)	가. 개발실적(0) 다. 활용실적(0)	나. 투자실적(0)																			
라. 교육훈련	0	◦ 산출식 : A+B+C ≤ 1.0 - 참여기술인 · A=(2주이상 교육이수인원수 / 평가대상 인원수)×1점 · B=(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이수 인원수 / 평가대상인원수)×0.5점 - 참여회사 · C=실무자교육점수[분야별 (도로+구조+토질) 배점]	5. 업무 중첩도 (00)	<table><tr><td>구분</td><td>책임(참여)기술인</td><td>실무기술인</td></tr><tr><td>(만점) 중복비율</td><td>250% 미만</td><td>200% 미만</td></tr></table>	구분	책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만점) 중복비율	250% 미만	200% 미만											
			구분	책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만점) 중복비율	250% 미만	200% 미만																			
6. 감점	비리관련 설계사 감점	-00	· 금품제공·수수 등 비리 사실에 대한 감점																		
마. 전차용역 수행실적	0	◦ 산출식 : 배점×Σ(기술인별가중치×A×B×C) · A : 전차용역 경과기간 계수 · B : 기술인 소속 변동에 따른 계수 · C : 전차용역 연장비율에 따른 계수	7. 가점	건설 기술인 신규고용	+0.0	<table><tr><td>신규 고용률</td><td>1% 이상</td><td>2% 이상</td><td>3% 이상</td></tr><tr><td>가점</td><td>0.1</td><td>0.2</td><td>0.3</td></tr></table>	신규 고용률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점	0.1	0.2	0.3							
	신규 고용률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점			0.1	0.2	0.3															
바. 기술 및 업무관리 능력	0	◦ 산출식 : Σ(배점×등급별 가중치)	젊은 기술인 참여	+0.0	<table><tr><td>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td><td>5% 이상</td><td>3% 이상</td><td>1% 이상</td></tr><tr><td>가점</td><td>0.2</td><td>0.15</td><td>0.1</td></tr></table>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	0.15	0.1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	0.15	0.1																		
사. 특별제안 (가점)	+0	◦ 산출식 : Σ(기술인별 특별제안 획득가점)≤1.0																			

(5) 공공기관 계약특례 신청서(기획재정부 제출용)

신청기관	기관분류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기관명 0000	담당부서 000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특례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84조		
특례유형	☒ 신규 ☐ 내용변경 ☐ 특례 연장 ☐ 기타		
특례요청 주요내용	☐ (현행) 시공자는 계약예규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기술력·실적·도금액 등을 고려한 입찰참여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 설계사는 실적 및 기술능력 등 심사기준 없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함. ☐ (개선) 설계 참여사에 대해 자격심사[설계 P.Q(기술력·실적·신용도 등)] 기준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수준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개선 * 現 000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설계 P.Q평가를 도입하여 설계+시공 통합 역량이 우수업체 선정 및 성과 품질 강화 [설계 P,Q 평가기준 신설] ☐ 건설공사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시행하고 있음. 설계 주도형 턴키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절차에 시공 P.Q하기 전 설계 P,Q 평가 시행 〈설계 주도형 턴키 시행절차(안)〉 ① 입찰공고 → ② 설계 P.Q (추가) → ③ 기본설계 → ④ 시공 P.Q → ⑤ 입찰 → ⑥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⑦ 실시설계 → ⑧ 설계VE·최종 설계심의 → ⑨ 낙찰자 선정 → ⑩ 계약체결(발주기관↔설계자) 및 공사시행(설계자)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은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 - 건설공사계약 절차에 설계PQ를 추가하는 것은, 기존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없는 절차이므로 기재부 장관의 승인 필요		

특례요청 주요내용	[입찰참가자격 신설] ○ 대표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와 엔지니어링 면허를 모두 보유하도록 입찰참가자격조건 규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 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동입찰을 통하여 면허 보완하는 조건 미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 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동입찰로 면허조건을 만족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할 경우, 대표사인 설계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특례 요청사유	○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력 증진과 지휘 향상 및 설계 참여기술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설계 주도형 기술형입찰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000발주기관은 0000공사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코자함 ○ 소규모 정책 사업 중 공기단축 필요로 일괄입찰 시행시 시공과 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설계사와 시공전문업체가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추진 필요 (시공 실적 평가 완화 검토)
특례에 따른 기대효과	○ 시범사업 추진함으로써 시공 기술 인력과 설계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여 완성도 높은 시설물 건설이 가능 - 소규모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가능하고, 민간의 풍부한 기술력 활용 가능 ○ 기술형입찰의 건설프로세스의 통합관리(설계·시공)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사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 기대
특례 유효기간	○ 대상사업(00000공사) 한하여 적용 - 사업내용 : 00000 - 사업비 : 000억원 (발주공사비 : 00억원)

3.2 관계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

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시행일:2024. 1. 1.]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 입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3. 18., 2021. 9. 17.>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2021. 9. 17.>

1. 대상용역
 -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 다.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 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라.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50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업체의 직전 용역 등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인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 20 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한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평가방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28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공람하도록 해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2.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구분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역량		70	1) 참여기술인의 경력 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방법	1) 수행계획	1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2) 수행방법	15	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9조제2호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구분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역량		30	1) 참여기술인의 경력 2)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등

구분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항목
나. 수행계획·방법 및 기술향상	1) 수행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수행방법	35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 각종 영향평가 수행방법,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4) 경관 설계 등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기술향상	15	1)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5)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5. 12. 31., 2019.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19. 9. 17.>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등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2019. 9. 17.>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13. 9. 17., 2018.

12. 4., 2019. 9. 17.〉

1.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

2.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7. 21.〉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20. 1. 7., 2021. 9. 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 5. 25.]

(6)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심사기준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 별표 2 및 3을 고려하여 해당공사의 성질·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8.〉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0. 9. 8.〉

③ 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9. 8., 개정 15.9.21.>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 이상 <개정 2009. 4. 8.>
-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개정 2009. 4. 8.>
-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09. 4. 8.>

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

-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개정 2009. 4. 8.>
-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 이상 <개정 2009. 4. 8.>
-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단,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개정 2009. 4. 8.>

2. 삭제 <2007. 7. 4.>

④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9. 8.>

⑤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8., 2015. 9. 21.><단서삭제 2018. 12. 31.>

1.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별표2를 적용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 가-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가-2.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마. 간척공사

바. 준설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건설공사(단,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파. 폐수처리장건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거. 관람집회시설공사

너. 전시시설공사

더. 송전공사

러. 변전공사

2. 제1호 이외의 공사는 별표3을 적용

⑥ 제3항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개정 2010. 9. 8.>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시에는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분야별 심사항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 <신설 2018. 12. 31.>

2.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신설 2018. 12. 31.>

3. 일자리창출을 평가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실적 <신설 2018. 12. 31.>

제7조(심사기준의 조정) ① <삭제 2010.9.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공사의 성질, 내용 등

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적격요건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3의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신인도 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8., 2019.12.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신인도 분야의 각 항목을 해당공사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정한다.

(7)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개정 2008.12.29, 2010.9.8, 2011.5.13, 2012.1.1, 2012.4.2, 2012.7.4, 2015.1.1., 2015.9.21., 2021.12.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시공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 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0 (34) 20 (22) 10 (11)
2. 기술능력	45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 신인도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삭제 2019.12.18.>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012.7.4. 라목에서 이동, 개정 2015.9.21>	-2 〈삭제〉 -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3	나. 하도급관련사항	
	-7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5.9.21.>	+2
	<개정 2012.7.4., 2019.12.18>	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신설 2011.5.13.>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2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개정 2012.7.4.>	-7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신설 2008.12.29, 개정 2012.7.4.>	-7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2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1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개정 2015.9.21, 2019.12.18., 2021.12.1>	+1
		·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1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5.9.21.>	-2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개정 2018.12.31.>	-1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신설 2019.12.18.>	
		· 2회 받은 자	-0.5
		· 3회 이상 받은 자	-1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2
		· 2회이상 받은 자	+2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신설 2012.7.4.>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3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개정 2021.12.1.>	+2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2.5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0.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0.12.28.>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가"항목과 "나"항목은 택일 적용함
2.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해당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함.
3. ()의 점수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대해 적용함 <신설 2010.9.8.>
4.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는 ()의 점수를 적용함 <신설 2010.9.8.>
5.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신설 2021.3.19., 개정 2022.6.1.>>
 - 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 항목으로 평가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

다만,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본문에 따라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다" 항목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1.12.1.>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신설 2010.9.8.>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개발자 수로 나누어 평가함 <개정 2010.10.22, 2012.7.4, 2015.9.21, 2016.1.1.>
 - 1-1. "나"항목의 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함 <개정 2010.10.22, 2012.7.4, 2015.9.21, 2016.1.1.>
2. 기술개발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서류를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개정 2016.1.1.>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
4. 기술개발투자비용 산정 관련 결산서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가" 및 "나"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평가결과 는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개정 2021.3.19.>

주4) 지역업체참여도분야 평가방법 <신설 2010.9.8.>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 <개정 2018.12.31.>
2.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3. 단, 해당공사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분야는 심사에서 제외함 <개정 2015.9.21.>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주4)에서 이동 2010.9.8.>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함.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5.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개정 2012.1.1.>
6.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개정 2012.7.4.>
7.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18.>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8.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건축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신설 2012.7.4.>
9.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각한다. <신설 2015.1.1.>
10. "마"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로 평가한다. 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20.12.28.>
 - 10-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10-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같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10-3.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0-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

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0-5.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신설 2020.12.28.>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신설 2019.12.18.>
1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나. 2)" 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3.19.>

주6) <삭제 2021.3.19.>

(8)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2.>

설계주도형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가이드라인



부록

1. 설계주도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 개요
2. 설계주도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의 추진 사유
3. 설계주도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의 장단점

1 설계주도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 개요

(1) 추진 배경

-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글로벌 시장은 PPP 등 투자개발형 사업과 PM시장의 확대로 엔지니어링 업체가 시장과 기술을 주도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 전통적인 건설업체 중심의 EPC시장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PMC업체로 전환하여 기획부터 유지·운영까지 발주자를 대행하여 주도적 사업 수행 추진
- 이에 반해,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은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로 구분된 칸막이식 발주로 설계부터 시공 전반의 통합적인 사업관리 능력 제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 턴키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사는 시공사의 설계업무를 단순 지원하는 형태로 하청 계약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 PM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 시공사 주도의 기술형입찰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설계 및 시공 책임까지 담당하는 발주방식 도입 필요하다.
 - 국내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의 통합 사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유도가 필요하다.

(2) 설계자 주도 기술형입찰 방식 개요

- 설계자 주도 기술형 입찰방식은 설계자가 설계 및 PM역량을 기반으로 기술형입찰의 주관사이자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업무+PM(CM)형	설계자 주도 공동도급형	설계자 단독도급형
설계업무+발주자 사업관리 대행 - DBB(설계시공분리발주)와 리스크 부담 비슷 - 설계자가 PM으로서 사업완수의 책임 부여	설계자가 공동도급의 주관 - DBB보다 리스크 부담 커짐 - 리스크는 계약에 의해 발주자, 종합건설업자와 분배가 가능	설계자가 설계시공 전담 - 설계자 리스크 최대 - 사실상 설계자=종합건설업자

설계자 주도 방식의 유형과 설계자의 리스크

- 사업의 흐름에 따라 설계→시공 계약이 추가되는 3단계의 점진적 프로세스 구현으로 발주자에게 유리한 발주방식이다.

설계자 주도 기술형입찰 방식의 프로세스

- (1단계) 설계업체와 발주자는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 체결
- (2단계) 사업 범위가 충분히 정의되면, DB계획서를 작성·제출
- (3단계) DB계획서에 대한 발주자 승인 후,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DB계약을 체결
(설계자는 PM(CM 포함)의 역할 수행)

- 전통적인 건설업체 주도 기술형입찰은 공기단축 및 단일한 수행책임 등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설계의 질적인 측면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 미국 건축사협회(AIA)는 설계사 주도의 DB는 발주자의 신뢰관계를 조기에 형성하고 발주자와 설계자의 의도 전달, 고품질 설계에 유리하다는 견해 표명

- 설계사 주도 기술형입찰방식은 공기단축이나 공사비절감, 시공오류 최소화 측면에서 건설업체 주도 방식에 비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설계사 주도 턴키방식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확대 가능(과다설계 방지)	■ 설계사의 위험 부담 증가 (건설공사의 계약적 위험 부담 등)
■ 시공 오류 최소화로 품질 확보(시공 전 과정 참여)	■ 설계사의 건설안전에 대한 추가 보험, 보증 요구
■ 설계자의 설계의도 전달 명확화	■ 공사비 초과 시 설계사 이윤 감소

(3) 해외사례

- 설계 주도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은 미국(AIA, ASCE 등)을 중심으로 ‘Architect led Design-Build’, ‘Design led Design-Build’, ‘Engineer led Design-Build’로 제시하고 있다.

* DBIA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DB사업의 13%('99) ~ 24%('04) 차지(시공자 주도 49% ~ 54%)

* 사례 : 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Greensville Prison Upgrades(160억원, '16), New River Resource Authority Landfill Expansion & Partial Closure(90억원, '10), Manatee Charter School('13) 등

(4) 유형별 국내 적용성 검토

- (1형) 설계자의 업무를 설계+PM(CM)으로 확대

- 발주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와 각각 계약을 맺고 설계자는 발주자를 대행하는 체계로 종합사업관리와 각 참여자간 간섭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DB방식에 비해 계약이 복잡하고 최종 리스크가 발주자에게 과다하게 집중

- (2형) 설계자가 공동도급의 대표사로 시공사와 통합프로젝트 관리

- 기존의 기술형입찰 계약방식과 유사하나 대표사를 시공자가 아닌 설계자로 하며 리스크는 계약에 의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분배할 수 있다. 설계자의 리스크는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과 비슷하다.

설계업체가 시공업체에 비해 사업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설계 완성 이후에 시공의 역할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공동도급의 주계약자로서 역할 미흡

* 설계자가 시공을 맡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리스크와 역할이 시공자에 집중되고 설계 이후 설계자의 업무가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설계자 주도에 한계점 발생

- (3형) 시공관리 역량이 있는 단일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이 프로젝트 수행

- 설계 및 시공 역량을 갖춘 업체에서 책임 설계, 책임 시공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시공이 통합된 선진 기업등에 적합한 방식이다.

공사금액이 큰 경우에 국내 여건상 설계 및 시공 역량을 고루 갖춘 설계엔지니어링 회사는 소수

* 공사금액이 큰 경우에 J/V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국내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특성상 시공자와 대등한 규모의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2~3개 내외로 한정

* J/V: Joint Venture (합작투자, 공동기업)는 2개 이상의 회사가 특수목적 달성을 위해 각자 출자하여 새로운 공동의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 1형의 경우는 향후 PM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활용 가능한 형태이며 설계자가 컨소시엄의 대표로서 책임설계와 일부 책임시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2형'과 50억이하 소규모 공사에서 강점이 있는 책임설계 및 책임시공이 가능한 '3형'으로 설계주도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추진이 적합

(5) 설계사 주도 기술형입찰 시행방안(안)

- (추진방식)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가 사업 주관사(설계 및 PM업무 수행), 건설업체가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 설계·시공 전반에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
 - (적격자 선정) 설계업체는 시공업체의 지원하에 입찰서(시공업체 시공확약서 포함) 제출하고,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낙찰자 결정) 선정된 설계업체는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사업의 범위와 금액이 확정하고, 심의 후 낙찰자로 결정되면, 시공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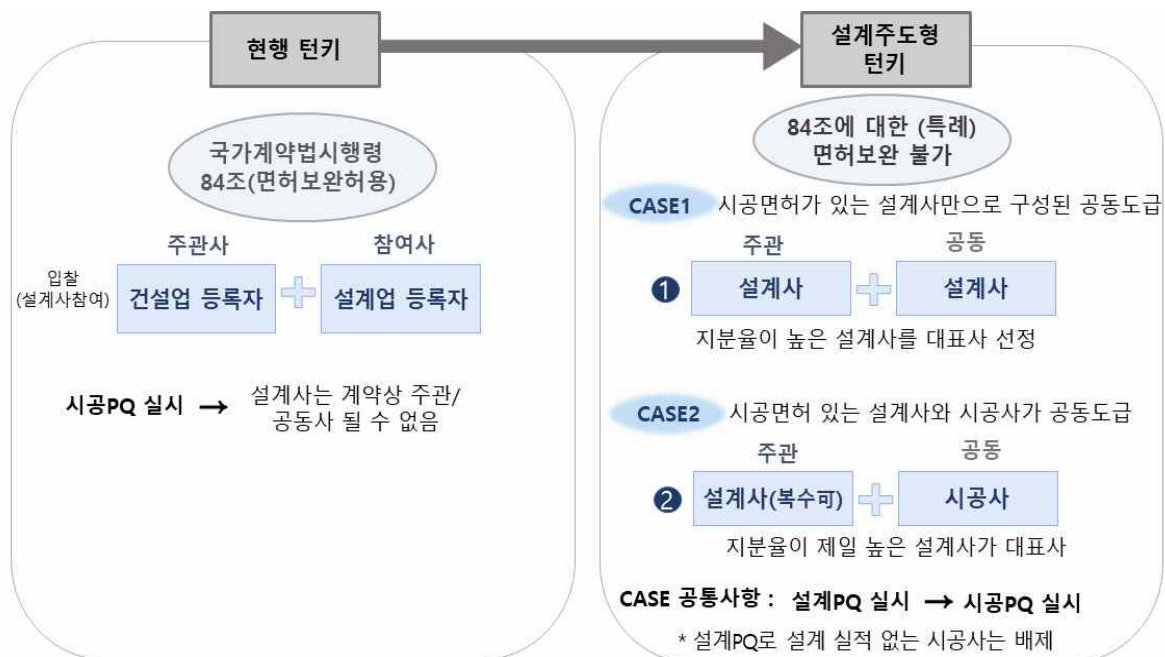
Ⅰ 설계사 주도 기술형입찰 추진 절차 Ⅰ

① 입찰공고 → ② 입찰서 제출(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설계서 제출, 시공업체 시공확약서 포함) → ③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 ④ 실시설계 심의(공사계약 범위 및 금액 확정) → ⑤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계약 변경, 사업관리 포함) → ⑥ 사업시행

- (설계+PM형 리스크 분담) 설계사는 설계·PM 업무를 총괄하고, 시공사는 설계사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수행
 - 공사 중 발생하는 위험은 발주청과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설계사가 부담하되,
 -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시공확약서등을 근거로 시공사 부담 원칙(시공확약서에 별도 부담원칙 제시 가능)
- (공동도급형 리스크 분담) 설계사가 일정부분 시공을 분담하여 이행하고 설계사가 이행한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만 리스크 분담이 원칙
 - 시공경험이 부족하다는 점과 설계사 규모가 시공사이 비해 영세하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본 방식은 소규모 공사에 적합

2 설계주도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의 추진 사유

- 선진국은 건설산업에 있어서 건설 엔지니어링이 주도적으로 설계-시공-운영관리 등 전 과정 통합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시공 위주의 단순설계에 머물러 건설 전과정 통합영역 진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 국내 건설산업을 전통적 건설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고부가가치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을 “건설 엔지니어링 발 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13차, '20.9.3)
- 건설 엔지니어링을 융합·통합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현행 시공사 주도의 턴키사업을 설계엔지니어링 업체가 주관사가 되어 설계 및 시공 최종 책임까지 담당하는 턴키 발주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시행 과정에서의 효과 검증과 입찰 절차 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설계자 주도 방식과 현행 턴키 제도간 비교

- 이 방식의 장점은 기획재정부 특례로 추진할 두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는 현행 제도에서 큰 변화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설계사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설계·시공 역량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설계사의 시공능력 향상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국제입찰 등에서 경쟁력 있는 설계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 단점으로는 설계 주도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이 300억 미만 소액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특성상 계약 체결후 공사비 증액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 공사비 예측방식만으로는 사업 실패의 리스크가 존재한다.